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35호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변경하여 각종 의안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간사 명칭 정비(안 제5조)

- 간사-> 부위원장으로 변경

나.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안 제10조제2항제1호)

- 관광문화국-> 문화관광국으로 변경
- 보건의료원, 읍면 삭제

다. 농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안 제10조제2항제2호)

- 보건의료원, 읍면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간사가”를 각각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문화관광국

제10조제2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건의료원

바. 읍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간사로 임명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의 설치) <u>임실군의회</u> (이하“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u>특별 위원회</u>를 둔다.</p> <p>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u>간사</u> 1인을 둔다.</p> <p>② <u>간사</u>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간사</u>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장 및 <u>간사</u>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u>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u>」에서 정하는 전문위원을 둔다.</p> <p>②·③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② (생략)</p>	<p>제2조(위원회의 설치) ----- ----- -- <u>특별위원회</u>-----.</p> <p>제5조(부위원장) ① --- <u>부위원장</u> -----.</p> <p>② <u>부위원장은</u> -----.</p> <p>③ ----- ----- <u>부위원장</u> <u>원장이</u> -----.</p> <p>④ ----- <u>부위원장이</u> ----- ----- ----- ----- -----.</p> <p>제7조(전문위원) ① ----- ----- ----- 「<u>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p>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⑤ (생략)

제1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생략)

②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관으로 한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가. ~ 마. (생략)

바. 관광문화국

사. 보건의료원

아. 읍면

2. 농업복지위원회

가. ~ 라.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③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문화관광국

<삭제>

<삭제>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보건의료원

바. 읍면

③ (현행과 같음)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